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 근로 기준 집행과(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가 집행하고 보호합니다. DLSE는 차별, 임금, 어린이 노동,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들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상관없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주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권리입니다:

1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시간, 성과, 커미션 또는 다른 계산 방법 등 임금을 측정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당 $9.00 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
근로자는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도중에 또는 2시간 이상 작업한 후에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식사 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
근로자가 5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식사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결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
근로자 재해 보상 청구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면 무료 전화 1-800-736-7401로 연락하거나 www.dir.ca.gov를 방문하여 근로자 재해 보상과(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를 클릭하십시오. 근로자는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와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구를 제공 받을 권리**
공구를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두 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 또는 기능상 필요한 수공구를 근로자가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임금을 받을 때마다 급여 또는 임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
수표, 현금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든, 근로자는 특히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급여 또는 임금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근로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임금 총액; 모든 공제 금액; 임금 지급 기간의 날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에 완료한 단위 작업의 수 및 단위 작업 당 임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지켜야 합니다.

뒷면에 계속

7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출근할 때마다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주의 요청을 받고 출근을 했으나 작업을 배정 받지 못했거나 또는 평상시나 예정된 하루 작업의 절반 미만의 작업을 제공 받은 경우, 그러한 평상시나 예정된 하루 작업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단, 최소 2시간 또는 최대 4시간 적용)에 대해 평소에 받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8 해고된 당일 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72시간 내에 고용주로부터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72시간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을 72시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 매일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30일 간).

9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클레임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노동 감독관과 논의할 권리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와 밀린 임금을 받고 보복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에 출석할 권리(보복을 당하지 않고)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DLSE 및/또는 고용주와 노동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근로자를 해고, 강등, 정직 또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면 노동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하여 복직, 밀린 임금의 전액 지급 및 다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클레임 요령: 작업 시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종료 시간,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그리고 전체 작업 시간을 매일 적어 두십시오. 성과급을 적어 두거나,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급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진: Robert Gumpert

캘리포니아 주 근로 기준 집행과(DLSE) 지구 사무소에 연락하여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고,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클레임 양식을 얻으십시오.

Bakersfield	(661) 587-3060 7718 Meany Avenue, 93308
El Centro	(760) 353-0607 1550 West Main Street, 92243
Fresno	(559) 244-5340 770 East Shaw Avenue, Suite 222, 93710
Long Beach	(562) 590-5048 300 Oceangate, Suite 302, 90802
Los Angeles	(213) 620-6330 320 West 4th Street, Suite 450, 90013
Oakland	(510) 622-3273 1515 Clay Street, Suite 801, 94612
Redding	(530) 225-2655 250 Hemsted Drive, 2nd Floor, Suite A, 96002
Sacramento	(916) 263-1811 2031 Howe Avenue, Suite 100, 95825
Salinas	(831) 443-3041 1870 North Main Street, Suite 150, 93906
San Bernardino	(909) 383-4334 464 West Fourth Street, Room 348, 92401
San Diego	(619) 220-5451 7575 Metropolitan Drive, Suite 210, 92108
San Francisco	(415) 703-5300 455 Golden Gate Avenue, 8th floor, 94102
San Jose	(408) 277-1266 100 Paseo de San Antonio, Room 120, 95113
Santa Ana	(714) 558-4910 605 West Santa Ana Blvd., Bldg. 28, Rm. 625, 92701
Santa Barbara	(805) 568-1222 411 East Canon Perdido Street, Room 3, 93101
Santa Rosa	(707) 576-2362 50 “D” Street, Suite 360, 95404
Stockton	(209) 948-7770 31 East Channel Street, Room 317, 95202
Van Nuys	(818) 901-5315 6150 Van Nuys Blvd., Room 206, 91401

Cal/OSHA
1-800-963-9424

Cal/OSHA 지역 사무소:

북가주
(916) 263-0704

샌디에고
(619) 767-2060

로스앤젤레스
(562) 944-9366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510) 622-2891

최저 임금:
1-888-275-9243

통상 임금 핫라인:
(415) 703-4774

이 전단에 포함되어 있는 간략한 정보는 임금,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 행정법 또는 산업 복지 위원회의 임금 명령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 DLSE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dir.ca.gov
www.workitout.ca.gov

(REV. 2007)